



특허법 시행규칙 [시행 2024. 11. 1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, 2024. 10. 31, 일부개정]	특허법 시행규칙 [시행 2025. 7. 11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, 2025. 7. 11, 일부개정]
제16조(기간의 지정) ①법 제46조,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·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·특허심판원장·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.	제16조(기간의 지정) ① 특허청장·특허심판원장·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보정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1. 법 제46조·제141조·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정기간: 1개월 이내
<신 설>	2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: 4개월 이내
<신 설>	3.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: 2개월 이내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0조의2(특허여부결정의 보류)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0조의2(특허여부결정의 보류)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특허출원이 분할출원,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	1.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
2.3. (생략)	2.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의3(특허출원심사의 유예) ①·② (생략)	제40조의3(특허출원심사의 유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특허출원이 분할출원, 분리출원,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	1. 특허출원이 분리출원,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
2.3. (생략)	2.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